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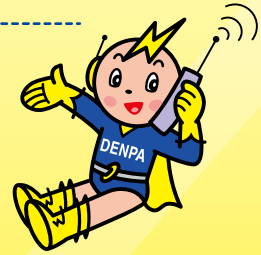
#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께

**Wi-Fi 단말기 및 Bluetooth 단말기** 등을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본 기술 기준에 적합하고 이를 증명하는 표시(그림 1)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.

그림 1: 기술 기준 적합 표시


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국일로부터 **90일** 이내에 한하여 특별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
## Wi-Fi 단말기에 관한 특례

Wi-Fi 로고(그림 2) 표시에 의해 국제적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여

- ◆공중 무선 LAN 스폿(접속 지점)에 접속한 경우.
- ◆스마트폰 등의 테더링 기능으로 통신하는 경우(※).
- ◆단말기끼리 직접 통신하는 경우(※).

(※)2.4GHz대 또는 6GHz대 VLP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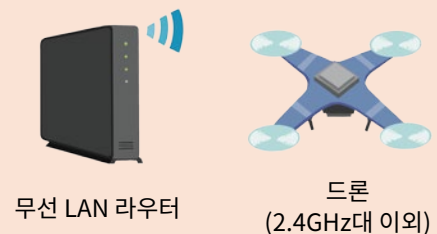
그림 2: Wi-Fi 로고



### ○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예



### ✕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의 예



## Bluetooth 단말기에 관한 특례

Bluetooth 로고(그림 3) 표시에 의해 국제적인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

### ○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의 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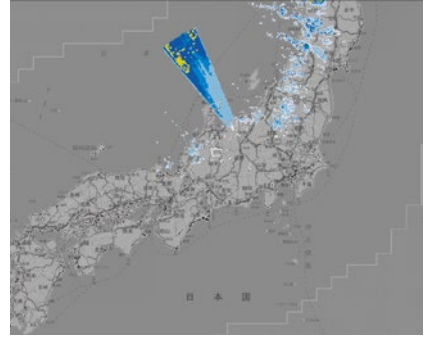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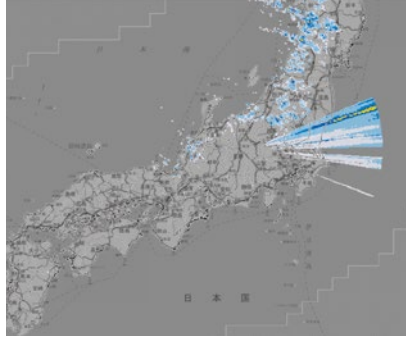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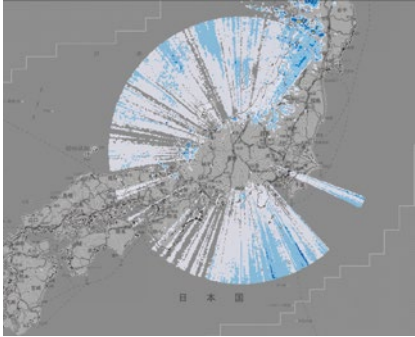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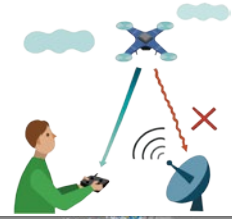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: Bluetooth 로고



【주의】 Wi-Fi 단말기는 주파수마다 2.4GHz대, 5.6GHz대 및 6GHz대 VLP는 옥내외, 5.2GHz대, 5.3GHz대 및 6GHz대 LPI는 옥내에 사용 장소가 한정됩니다. 사용하시는 단말기가 어느 주파수대를 사용하는지는 본체의 설정화면 및 취급설명서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

⚠ 일본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외에서 제조되었으며 본 안내서 뒷면에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, 일본의 중요한 무선국 등과 혼선하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.



혼선에 의한 간섭의 예 (기상 레이더)

## 공지

2023년 12월부터 6GHz대 무선 LAN 기기의 일부에 대해서도 90일 이내에 한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

해외에서 가져온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 (2023년 12월 개정 후)	주파수대 ※1					
	2.4 GHz대	5.2 GHz대	5.3 GHz대	5.6 GHz대	6GHz대	
					VLP	LPI
<b>○국내 Wi-Fi 스폿에 연결</b> 	○	○	○	○	○	○
<b>○스마트폰 및 모바일 Wi-Fi로 테더링</b> 	○	×	×	×	○	×
<b>○스마트폰으로 직접 통신</b> 	○	×	×	×	○ ※2	×

**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.**

※1 각 주파수대는 2.4GHz(2,400-2,483.5MHz), 5.2GHz(5,150-5,250MHz), 5.3GHz(5,250-5,350MHz), 5.6GHz(5,470-5,730MHz) 및 6GHz대(5,925-6,425MHz)를 가리킵니다.  
 ※2 6GHz대 VLP를 이용하여 단말기 간 서로 직접 통신을 하는 경우는 접속하는 단말기의 어느 한쪽이 스마트폰이어야 합니다.

▶ 자세한 내용은 **총무성 전파 이용 웹사이트**

<본 제도의 상세 내용·문의처>